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b>보도자료</b>	
	2016년 8월 16일 (화)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15   FAX (02)2635-1134		

## 8.16.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 등 노동부 정책 규탄

- 민주노총은 8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의 결의를 모아 농성투쟁에 돌입합니다.
-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더욱 참혹한 현실은 산업재해의 80%이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의 문제제기 예도 불구하고,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합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 총량제, 메탄올 중독사고 대책등 노동부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외주화 금지 입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도 알려나갈 것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및 프로그램>

일시: 2016년 8월16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

주최: 민주노총

#### < 프로그램 >

- 사회 : 민주노총
- 여는 말 \_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가. 산재은폐 개악안 추진경과와 문제점 \_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나. 건설현장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의 문제 - 건설노조 대전충청본부 부 본부장
  - 다. 한국 타이어,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실태와 개악안의 문제점 :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 라.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고, 현장의 80%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것이 OECD 가입국가인 한국의 현실이다. 2014년 국가 인권위의 조사에서는 하청 노동자 산재의 8-9%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90%이상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 현장의 드러난 산재은폐도 수두룩하다. 올해 현대건설의 원자력 공사 현장에서는 3년동안 121건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이중 산재보험 처리는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상으로 처리한 것이 밝혀졌고, 노동부의 조사에서 80% 가까이의 산재가 은폐되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올해만 1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현대중공업도 지난 수 년동안 6차에 걸쳐 200여건에 달하는 산재은폐가 고발되기도 했다. 조선업, 건설업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받는 공무원, 교사, 대학병원 노동자들의 산재도 은폐되어 산재보고도 되지 않고, 정부 대책도 전무하다. 그야말로 산재은폐 공화국이다.

산재은폐는 기업의 범죄이다. 단순한 산재보고에 대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최근에 발생한 충북 에버코스 사업장, 서울 제2롯데월드 현장, 부산 신세계 건설 현장등에서는 산재은폐를 위해 119도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산재은폐를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지정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공상처리 지침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산재신청을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해고 위협을 하고, 보상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고 직업병에 걸려도 각종 해고, 전직, 전보, 각종 일터 괴롭힘으로 산재 은폐를 위해 나서는 사업주들의 압박에 쥐꼬리 만한 보상을 받거나,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산재은폐가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부는 지난 4월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 산재보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43개의 노동조합, 단체, 학회 등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 개악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들은 산재은폐로 적발 되도, 노동부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산재보고만 하면 되므로, 산재은폐는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재은폐를 하면 공공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거나,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각종 산재은폐 감소방안도 무력화 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의 개악안은 휴업 3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산재보고 기준도 휴업 4일로 완화하고 있다. 요양4일이었던 산재보고 기준을 2014년부터 휴업3일로 도입되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휴업치료를 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사업주의 임의대로 휴업일을 조작하고 있다. 더구나, 요양4일에서 휴업 3일로 보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의 30%는 통계에서 빠져서 산재가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공단의 산재보상 휴업급여 기준과 맞추어야 산재 미보고 사업장 대상 선정이 용이하다며, 오로지 행정편의적인 발생으로

보고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개약안대로 하면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갖게 된다. 산재사망 1위 한국에서 가장 최저 수준의 산재보고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개약안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약안 폐기를 요구해 왔다. 산재은폐 개약안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 노동부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개약안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에서 사업주들은 메탄올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점검으로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업주들은 낮에는 에탄올, 밤에는 메탄올을 사용했다. 또한 노동부 점검에서는 에탄올로 교체했다고 하고, 메탄올을 사용해서 노동자 1명이 또 다시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산재 신청과정에서 사업주들의 확인을 받거나, 공단이 산재신청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산재 발생 사실과 산재보고 제도를 알리고 있다. 2중 3중의 산재보고 제도 안내를 받고도 메탄올 중독 사고 때처럼 “몰랐다” 고만 하면 산재은폐 처벌에서 빠져 나가게 되는 개약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개약안을 적극 환영할 곳은 무수한 이유를 대면서 산재은폐를 밥 먹듯이 하는 사업주와 하청, 파견 노동자 산재은폐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게 되는 원청 사업주들 뿐이다.

하청과 파견 고용등 얽히고 설킨 현장의 고용구조 현실은 도외시 한 채 “산재은폐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 만 해결하겠다는 개약안은 노동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민주노총의 수 개월에 걸침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약안 강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8월16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는 바이다. 노동부는 즉각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개약안을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개약안 폐기를 위해 농성 투쟁을 시발로 하여 전 조직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산재은폐 산안법 개약안 폐기하라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 !!  
규제완화 중단하고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하라!!

2016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2. 산재은폐 적발 경로와 실태
3. OECD 국가 산재통계 기준



## 첨부자료2. 산재은폐 적발 경로와 실태

### 1) “노동부가 해당 산업재해를 인지한 날” 예시 안

- 3월16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에 제출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 한 시점
- 요양신청서 승인정보 확인, 119 구급대, 응급환자 민간이송업체, 병원 구급차량의 사업장 [출동 및 처치기록]확인,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정보 확인, 요양신청서 반려 정보 확인, 사업장 감독

### 2) 산재은폐 적발 및 처벌 현황

- 노동부 산재은폐 적발 중 사업장 감독에 의한 것은 매년 10건 내외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 현황 / 2013년 국정감사 자료]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2,102	1,591	1,908	456	1,242	115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34	982	1,500	78	785	47
산재 은폐 신고센터	1	2	0	1	0	2
자진신고기간	22	8	14	19	4	9
사업장 감독	167	8	11	8	224	5
119 구급대 재해	65	28	6	21	0	0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713	563	377	329	229	52

\*2008년 사업장 감독 건수 중 143건은 한국타이어 단일 사업장으로 진정에 의한 감독임.

\*2012년 사업장 감독 중 100건은 유성기업(노조 진정 건), 86건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임.

- 국민 권익위 조사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산재보험이 자동차 보험의 4배- 5배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권고 2014년]

연도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건수 (1,000건)	금액 (백만원)	건수(1,000건)	금액(백만원)
2011	398	63,450	63	24,960
2012	333	56,781	81	27,305
2013	444	71,300	90	26,751

### 3) 산재인지 경로별 실태와 문제점

제도	내용	개정안의 문제점
산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한 정보를 노동부에 통보</li> <li>-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 사업주 날인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사실 확인 요청, 산재보고 제도 안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은 산재신청 과정에서 두 단계에 걸쳐 산재발생과 신청을 알고 있음에도 산재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다시 또 시정기회를 주는 것임.</li> <li>-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접수 과정에서 충분히 산재보고 안내를 강화 할 수 있음</li> </ul>
건강보험금 부당이득금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절, 염좌, 타박상등 일부 상병에 대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산재로 의심되는 건수를 건보공단 지사에 통보, 지사에서 조사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하고 전산입력. 공단본부에서 분기별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은 이미 산재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당 사례이며, 산재은폐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li> <li>- 건강보험 공단에서 노동부에 통보 시 까지는 사고발생 이후 최소 6개월 정도 이후 시기.</li> </ul>
119. 민간응급차량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차량 이송 건수를 분기별 노동부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시스템 구축 안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에버코스 지게차 사고, 롯데월드 건설 공사등 중대재해도 산재은폐를 위해 민간응급 차량을 이용 지정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는 경우 발생. 민간응급 차량 이송의 경우 산재은폐 개연성이 높음.</li> </ul>
진정, 고발 및 사업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에 진정, 고발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에 산재은폐 진정, 고발의 경우에는 상당수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하지 않거나, 공상 처리한 경우임.</li> <li>- 사업주들은 노동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지정병원과 유착하여 진료기록 조작, 폐기 등의 방법으로 산재은폐.</li> <li>- 노동자들은 해고나 블랙리스트의 위협을 감수하고 산재은폐 진정, 고발을 하게 되나, 개정안이 도입되면 사업주는 면죄부 처리됨.</li> </ul>

### 첨부자료3. OECD 가입 국가중 가장 완화된 산재보고 및 통계 기준인 한국

- OECD 가입 국가의 상당수는 산재보상 자료를 산재통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산재통계의 기준은 <1일 이상의 근로손실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한국의 휴업일 개념과 다름. 한국과 동일하게 결근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 개념은 일본의 경우임
- 한국에서 외국의 근로손실일수와 근접한 개념은 <요양일> 임.
- 사업주의 산재보고를 기준으로 산재통계를 작성하는 국가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만 휴업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 보고대상 기준은 휴업1일임. 단 산재통계는 휴업3일이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완화된 산재보고 기준으로 산재통계를 취합하고 공식화 하고 있는 것임.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 경제활동 지표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2009 산업안전공단]

국가명	산재통계 기준	기준일	비고
벨기에	산재보상자료	요양1일 이상	
캐나다	산재보상자료	요양1일 이상	1일 이상 업무 수행불가
프랑스	산재보상자료	모든 산재	기술통계는 휴업1일 이상 재해, 사고당일 제외
독일	산재보상자료	요양3일 초과	(독일의 휴업일 의미는 출근 불가 및 출근은 하되 업무수행 지장 포함임)
그리스	산재보상자료	요양1일 이상	
아이슬랜드	행정자료	요양2일 이상	
이탈리아	산재보상자료	요양3일 이상	통근재해는 3일이상 결근
멕시코	산재보상자료	요양1일 이상	
스웨덴	산재보상자료	요양1일 이상	
미국	조사자료	요양 1일이상	미국의 휴업의 의미는 결근과, 출근하였으나 업무장해를 모두 포함)
호주	산재보상자료	요양5일 이상	
스위스	산재보상자료	요양1일이상	
체코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1일 이상	사고당일 제외
덴마크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1일 이상	사고당일 포함
핀란드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3일 이상	사고당일 포함
헝가리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3일 이상	
아일랜드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3일 이상	
일본	사업주 보고자료	휴업1일 이상	사업주 보고는 휴업 1일 이상. 산재통계는 휴업 3일 이상
슬로바키아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1일 이상	
스페인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1일 이상	
영국	사업주 보고자료	요양4일 이상	(영국의 휴업의 의미는 결근과, 출근하였으나 업무장해를 모두 포함)

- 최근 영국이 사업주의 산재보고 대상을 7일로 개정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사업주는 연속 3일 이상 결근하거나, 근무가 불가능한 산재 기록의무가 있고, 산업안전청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 영국의 휴업재해의 개념은 결근과 출근하였으나 업무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2015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공단)